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으로 명시 등 》
■ 김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37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김희정의원 대표발의(제2211337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으로 명시 등 (안 제20조 등)	3

I. 김희정의원 대표발의(제2211337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희정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7. 8.

다. 회 부 일 : 2025. 7. 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하안전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구분하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착공후지하안전조사(사업 착공 후에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은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시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되었는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도 지반침하 발생 신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결과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현행법 시행령에서 조사를 월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주요 굴착공사 진행 완료 후에 조치를 이행하는 경

우가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지속적인 조사 및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추가하여 상시적으로 영향을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 20조제1항 등).

3. 검토의견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으로 명시 등 (안 제20조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① 지하개발사업자(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 지하 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① ----- ----- <u>(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u> ----- ----- ----- <u>해당 사업을</u> ----- ----- ----- ----- ----- - <u>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u>
②·③ (생략)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u>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②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③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 3. (생략) 4. <u>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u>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 ~ 9. (생략) ② (생략) 제5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u>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u>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 9. (생략)	③ ----- ----- --제21조, 제22조----- -----. ----- ----- -----. 제51조(벌칙)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20조제1항에</u>----- ----- ----- ----- 5.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벌칙)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20조제1항에</u>----- ----- 2의2. ~ 9.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생략) 제56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2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 5. (생략) ③·④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제20조제1항을----- ----- 2. 제20조제2항을----- ----- 3. ~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 제20조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후지하안전 조사 대상으로 명시하고(안 제20조제1항 전단 및 제23조제3항),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¹⁾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0조제1항 후단 신설), 이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이 필요한 비용의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9. “승인기관의 장”이란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안 제20조제4항 신설) 하려는 것임.

(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으로
명시(안 제20조제1항 전단 및 제23조제3항)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20조 및 제23조를 살펴
보면,

현행법 제20조²⁾는 제1항에서는 ‘지하안전평가³⁾ 대상사업’⁴⁾을 하려는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① 지하개발사업자(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조사서(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라 한다)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조사기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통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해당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라 함) 하여 그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조사서(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라 함)와 지하 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5.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사업
 - 15의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 ②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범위 등과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방법,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제14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 1: 참고(p.21)로 첨부함.

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등⁵⁾에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23조⁶⁾는 제1항에서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⁷⁾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⁸⁾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방법,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

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별표 1: 참고(p.21)로 첨부함.

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를 말한다.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 현행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현행법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3장제1절(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 중 제14조를 제외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 준용되는 사항에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20조도 포함되어 있음.

【지하안전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등 및 해당 사업의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관련 조문 구성 체계】

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제1절 지하안전평가 및 긴급안전조치 등	제2절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제14조(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 제23조제3항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2
제15조(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제16조(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등)	
제17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제18조(협의 내용의 조정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재협의 등)	

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제1절 지하안전평가 및 긴급안전조치 등	제2절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제19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조까지 및 제22조의2를 준용
제19조의2(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	
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제21조(협약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감독 등)	
제22조(재평가)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그런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시행령 제21조제1항⁹⁾과 지하안전평가서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7]¹⁰⁾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해서는, 지하안전평가서에 착공 후부터 시공 완료 전까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하도록 조사 시기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지하안전평가서에 기재된 실시기간에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라 한다)는 지하안전평가서에 기재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기간에 해야 한다.

1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25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지하안전평가서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방법】

지하안전평가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1. 요약문 - 대상사업의 개요,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종합평가 및 결론,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1. 요약문 - 대상사업의 개요,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종합평가 및 결론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2.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	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
3.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계획등 또는 지하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정	3.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계획등 또는 지하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정
4. 지반 및 지질 현황 -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기본자료와 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성	4. 지반 및 지질 현황 -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기본자료와 시추조사, 투수시험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성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 기존 관측망 자료와 지하수 조사시험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작성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 기존 관측망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상 지역의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작성
6. 지반안전성 검토 -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	6. 지반안전성 검토 -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 지하안전평가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계측계획,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 등)으로 수립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계측계획,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 등)으로 수립
8. 종합 평가 및 결론 - 각각의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에 대	8. 종합 평가 및 결론 - 각각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

지하안전평가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한 개별적인 평가를 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	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
9.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부터 시공 완료 전까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하도록 조사 시기를 명확하게 기록	-
10. 부록 가.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다. 용어 해설 라.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마.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등	9. 부록 가.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다. 용어 해설 라.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마.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등

※자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별표7(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이와 관련하여, 2023년 및 2024년의 굴착공사 부실 지반침하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사고 25건 중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사고가 10건으로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사고 6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23년 및 2024년 굴착공사 부실 지반침하 사고 현황】

(단위: 건)

연도	굴착공사 부실 지반침하 사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미대상 사업*	확인불가**
2023년	13	5	5	2	1
2024년	12	1	5	5	1
합 계	25	6	10	7	2

※자료: 국토안전관리원[출처: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주- *미대상: 사고지점 인근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현장 부존재

**확인불가: 사고지점이 굴착공사 범위 내에 있으나, 해당 공사로 인한 사고 발생 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

개정안은 굴착공사 부실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 발생 현황을 고려할 때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제23조제3항11)에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문 중 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삭제하고(안 제23조 제3항), 안 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안 제20조제1항 전단),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안 제20조제1항 전단 및 제23조제3항 주요 개정 사항】

구 분	주요 개정 사항	
안 제20조제1항 전단	○ <u>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u> 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u>착공후지하안전조사</u> 를 하도록 명시	
	현	행
	-지하개발사업자(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지하개발사업자(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1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③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

구 분	주요 개정 사항	
안 제23조제3항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준용 대상에서 제20조 삭제	
	현	행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를 준용함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준용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 구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모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적용하기보다는 연약 지반공사 등 위험도에 따라 실시 여부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으며, 2025년 12월까지 진행 예정인 지하안전제도 개선 연구용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준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임.

(2) 상시적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조치 요구 및 비용 지원

(안 제20조제1항 후단 및 제20조제4항 신설)

현행법 제20조제2항¹²⁾은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조사서(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라 한다)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내용 및 결과 제출 시기와 관련하여 현행법 시행령 제21조제4항¹³⁾은 ①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실시 중인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실시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②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3조의2¹⁴⁾는 ‘월간보고’를

1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실시 중인 경우: 그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 달의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내용. 다만,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실시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

14)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3조의2(월간보고) ① 영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내용에는 제23조제1항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내용에는 시공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착수한 후 최초로 제출하는 지하안전영향조사의 내용에는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구성) ① 착공후지하안전조사는 영 제21조제3항 및 영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자료와 지하안전평가서를 기초자료로 하여 조사를 수행하며, 필요시 추가 현장조사나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요약문
2.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사업의 개요
3.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상지역의 설정
4. 지반 및 지질 현황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6. 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및 이행여부 검토
7. 지반안전성 검토
8. 종합 평가 및 결론
9. 부록

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조 제목으로 하여 지하개발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¹⁵⁾

이에 비하여,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0조제1항 후단 신설), 지하개발사업자가 이에 따라 상시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20조제4항 신설).

이는 현행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고시에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내용

-
- 나. 지하안전평가서 자료
 - 다. 용어 해설
 - 라.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 마. 지반안전성 계측 및 수치해석 검토 자료
 - 바. 조사서 작성 시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15) 국토교통부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시행하고,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제출은 최초보고서, 월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시기마다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3.2.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 시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실시 시기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시행함.

2.3.3.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제출 시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는 월간(최초보고서, 월간보고서, 최종보고서)으로 시기마다 제출하며 착공시 지하안전평가서 및 협의내용 반영여부를 포함하여 최초보고서를 제출하고, 매월 시공현황 및 계측결과를 분석하여 월간보고서를 제출하며, 지하공사 완료 후 전체 조사된 내용을 포함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함.

※자료: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개정4판 2024.10., 국토교통부) pp.9.-11. 중 발췌

및 결과 제출이 월 단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상시적인 조사와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하개발사업의 시공 과정에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및 월간보고서 작성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착공후안지하안전조사서 제출 주기는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지하안전조사 비용은 적정 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3) 조문 정비(안 제51조제1항제4호, 제54조제1항제2호,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현행법 제51조제1항제4호, 제54조제1항제2호,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¹⁶⁾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사항인

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5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제5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현행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¹⁷⁾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 제23조제3항에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 제20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조문을 통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관하여 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준용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 제23조제3항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준용 대상 조문에서 제20조를 삭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51조제1항제4호, 제54조제1항제2호,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도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조문을 삭제하고 있음.

2. 제20조제2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① 지하개발사업자(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조사서(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라 한다)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 제51조제1항제4호, 제54조제1항제2호,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문 정비사항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개정 사항						
안 제51조제1항제4호, 제54조제1항제2호,	○ 안 제23조제3항에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준용 규정에서 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삭제함에 따라, <u>안 제51조제1항제4호, 제54조제1항제2호</u>에서도 <u>준용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조문 삭제</u> <table border="1"> <thead> <tr> <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head> <tbody> <tr> <td>-제20조제1항(<u>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td><td>-제20조제1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td></tr> <tr> <td>-제20조제1항(<u>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td><td>-제20조제1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td></tr> </tbody> </table>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제1항(<u>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제20조제1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제20조제1항(<u>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제1항(<u>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제20조제1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제20조제1항(<u>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안 제23조제3항에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준용 규정에서 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삭제함에 따라, <u>안 제51조제1항제4호, 제54조제1항제2호</u>에서도 <u>준용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문 삭제</u> <table border="1"> <thead> <tr> <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head> <tbody> <tr> <td>-제20조제1항(<u>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td><td>-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td></tr> <tr> <td>-제20조제1항(<u>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td><td>-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td></tr> </tbody> </table>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제1항(<u>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0조제1항(<u>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제1항(<u>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0조제1항(<u>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 의 처
02)6788-5591

**참
고**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중 관련 내용 기재]

구 분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동주택건설사업 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사업 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파. 「주택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하.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거. 「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호·제11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가 제16호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산업입지 및 산업단	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구 분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지의 조성사업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 다만, 가목·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지하안전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 조성사업. 다만, 자유무역지역 지정 전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에 대하여 지하안전평가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 사업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석유판매업의 시설 중 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시설 중 저장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 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설치공사 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및 제16호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사업 또는 전선로 설치사업 마.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 사업 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 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구 분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아.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사업
4. 항만의 건 설 사 업	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개발사업 나.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다만,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마목 공유수면의 매립사업은 제외한다. 다.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건설사업 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5. 도로의 건 설 사 업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 의 개발 사업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사업 나.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설치사업 다. 「수도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수도사업 라.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설치사업
7. 철도(도 시 철 도 를 포함 한다)의 건 설 사 업	가.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를 포함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8. 공항의 건 설 사 업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 발 사 업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사업

구 분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10. 관광 단지의 개발사 업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유원지의 설치사업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마.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 업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 조성사업(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하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12. 체육 시설의 설치사 업	가.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구 분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마.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사업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15.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사업	가.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지하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나.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모래·자갈을 채취하는 사업
16. 건축물 설치사업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

※ 비고

-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나.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다. 굴착 지역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또는 「공유수면 관

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바다 및 바닷가
인 사업

라. 굴착 지역의 경계에서 굴착깊이의 4배 이내의 거리에 제2조 각 호의 시설
물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

마. 그 밖에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지하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